

# 2025년도 숙명여자대학교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서

2025.03.31. 숙명 인권·성평등센터

## I. 추진 개요

### 1.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인권 및 성평등 의식을 증진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캠퍼스 환경 조성
- 교육을 통해 모든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되고 인권 친화적인 대학 문화 조성

### 2. 관련 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 제12조

## II. 운영 개요

### 1. 교육 대상 : 숙명여자대학교 전체 구성원

- 교원 : 총장, 전임교원, 비전임 교원 전체
- 직원 : 대학 소속 정규직·비정규직 직원과 조교 등 대학 소속 직원 전체
  - \* 휴직, 연수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교직원 제외, 교육 대상 인원은 인사발령 사항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 신규 임용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2개월 내 교육 이수 필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 (휴학생 및 학위취득 유예 학생 제외)
  - \* 대상 인원 산정 : 대학정보공시 기준(2025.04.01.)을 준용

### 2. 운영 방법

#### 폭력예방 통합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 내용 :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예방 교육 포함
- 교육 시간 : 분야별 각 1시간, 총 4시간 이상 (연 1회)
- 교육 방법 : 사이버 교육(교내 LMS 시스템), 집합 교육

####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법정의무교육)

- 교육 대상 : 총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 실·처장, 부속 기관장, 센터장 등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의 경우도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교육 시간 : 2시간 (일반직원 교육 내용과 별도, 연 1회)
- 교육 방법 : 대면 또는 온라인 실시간

□ 대상별 맞춤형 교육

- 교육 내용 :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예방, 2차 피해 예방 등의 신종 범죄 추가 교육, 대상별 성인지 감수성 또는 인권 교육 등
- 교육 방법 : 대면 집합교육, 세미나, 기관 내 사례 토론, 비대면 실시간 교육

3. 2024년도 운영 현황 및 2025년도 운영 목표

구분		2025년도 교육 운영 목표		2024년도 숙명여대 참여율		2023년도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교원	① 기관장	100%	90%	100%	88.7%	95%
	② 전임 교원	90%		88.9%		
	③ 비정규직 교원	80%		77.3%		
직원	④ 정규직	80%	80%	75.6%	78.8%	94%
	⑤ 비정규직	60%		29.3%		
	⑥ 조교	95%		98.6%		
학생	⑦ 학부생	65%	62%	60.7%	58.5%	86%
	⑧ 대학원생	60%		56.2%		

- \* 구분 ①~⑤은 교육 운영 부서의 결과 보고 기준, ⑥~⑧은 센터에서 운영 및 취합함
- \* 2024.4.1. 대학정보공시 인원 기준으로 작성하여 실제 교육 운영 부서의 결과 보고의 참여율과 차이가 있음
- \*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여성가족부 실적 점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시, 대학 인사담당 책임자(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등)의 특별교육, 기관명 공표, 현장점검 등의 후속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

Ⅲ. 세부 추진계획

1. 교육 대상

\* 2024년 대학정보공시 인원 기준으로 작성. 2025년도 인원 수는 2025.4.1. 이후 업데이트 예정

□ 교직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총장	교원				직원			계
		전임	비전임	강사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조교	
대학정보공시	1	415	1,252			172	739		2,579
인원 수	1	415	253	751	118	172	178	561	2,449
* 2024년 운영 부서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직원 인사팀	직원 인사팀	교무팀	

- \* 2024년 교직원 교육 실제 운영 부서의 보고 인원 수와 대학정보공시 인원 수의 차이가 있음
- \* 2025년도 운영 방식은 담당자 확인 후 확정 예정

□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학부	대학원	계
대학정보공시	10,219	2,392	12,611

2. 교육 구성

법정의무교육

1) 교·직원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구분	교원				직원		
	전임	비전임	강사	연구원	정규직	비정규직	조교
운영 주체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교무팀	직원인사팀	직원인사팀	교무팀

- 교육 대상 : 전임 교원, 비전임 교원, 강사, 연구원 등
- 교육 시기 : 4월 ~ 11월
- 교육 방법 : 교내 LMS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 \* 부서 상황에 따라 다른 법정의무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 인권·성평등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여 사이버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145분 내외 교육 영상 및 형성평가를 완료해야 총 240분의 법정의무교육 시간 인정 가능)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총 4시간 이상)

2) 학생 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

구분	학부생		대학원생	
	공통	* 외국인유학생	공통	* 외국인유학생
운영 주체	인권·성평등센터 (비교과)	유학생서비스팀	인권·성평등센터 (sm-mooc)	유학생서비스팀

※ 공통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 학부생

- 교육 대상 : 전체 학부생
- 교육 시기 : 4월 ~ 11월
- 교육 방법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 단, 대면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총 2시간 이상으로 구성 가능
- \*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 ①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 선수요건, ②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참여 시 마일리지 제공

## □ 대학원생

- 교육 대상 : 전체 대학원생
- 교육 시기 : 4월 ~ 11월
- 교육 방법 : 교내 SM-MOOC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 교육 \* 단, 대면 집합교육의 경우에는 총 2시간 이상으로 구성 가능

## ※ 별도 운영 (담당 부서에서 운영 후 결과 공유)

### □ 외국인 유학생

- 교육 대상 : 전 학부생
- 교육 시기 : 3월 말 ~ 11월
- 교육 방법 :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또는 대면 집합교육 중 해당 운영 부서에서 선택
- 교육 내용 : 성폭력·가정폭력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교제폭력·스토킹 예방·2차 피해 예방 등의 신종 범죄 등에 대한 예방교육 (2시간 이상)

※ 2025년도부터는 교직이수자도 전체 대상 교육을 이수해야 함

## 3)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 교육 대상 : 총장, 부총장, 단과대 학장, 실·처장, 부속 기관장, 센터장 등 (필요에 따라 전임교원의 경우도 고위직 별도 교육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교육 시기 : 5월 ~ 12월
- 교육 방법 : 소규모 대면교육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화상교육 가능)
- 교육 내용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2시간 (일반직원 교육 내용과 별도, 연 1회) \* 교·직원대상 폭력예방 통합교육과 별도의 교육임

## 교육

## 4) 학생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교육 \* 2025년 신규

- 교육 대상 : 신종 성범죄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학부·대학원)
- 교육 시기 : 5월 ~ 11월
- 교육 방법 :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교제폭력, 스톱킹 범죄,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등 신종 성범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례와 예방 또는 대처 방안 (1회에 1~2시간 사이)

### 5) 맞춤형 숙명 인권·성평등 교육

- 교육 대상 : 모든 숙명여대 구성원
- 교육 시기 : 5월 ~ 11월
- 교육 방법 : 온라인 실시간 세미나 또는 대면 집합교육
- 교육 내용 : 인권·성평등과 관련 학습자 수요 맞춤 (교육 시간 조정 가능)  
\* 자세한 교육 내용의 주제는 <2025년 인권·성평등센터 맞춤형 교육 신청서> 참조

### 6) 전담 인력 고충상담원 교육

- 관련 근거 : 인권·성평등센터 운영 및 사건처리 시행세칙 제3조
- 교육 대상 : 인권·성평등센터 전담 인력 (총 3명)  
\* 인사발령 사항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방법 : 온라인 실시간 교육 또는 현장 교육
- 교육 내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학 인권·성평등센터협의회 등 유관기관 교육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신고센터 운영

### □ 관련 근거

-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5조(업무) 1. 상담·조사 및 피해자 구제

### □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상담원 지정

- 위치 : 수련관 803호(사무실), 701호(상담실)
- 역할 : 성관련 고충 상담, 신고, 접수 및 절차 안내 등

### □ 사이버신고센터 설치

- URL : <https://forms.gle/wXzqcdKHCazzcqwU6>
- 역할 : 신고 접수 및 상담 신청 등

## 4. 예산

- 2025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편성 예산

## V. 행정 사항

### 1. 홍보

-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교내 IPTV, 헤이영 메시지, 이메일 등
- 본교 각 기관 및 부서의 교육 참여 독려 협조 요청 (관련 근거: 인권·성평등센터 규정 제 4조)

## 2. 향후 계획

-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 모니터링 및 매 학기말 구성원별 폭력예방교육 전체 이수 실적 결과 공유
- 연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구성원 유형별 참여율, 고위직 참여율 등)를 반영하여 차년도 예방조치 및 예방교육 운영 계획에 반영
- 부서별(또는 구성원별) 교육 이수 의무화제도 또는 우대조치 실시 결과 등에 따라 차년도 예방조치 및 예방교육 운영 계획에 반영

## 3. 협조 요청

- 우리 대학이 부진기관에 선정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와 관심 필요
- \* 부진기관 선정 기준 : 전체 종사자 참여율 75% 미만, 고위직(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75% 미만, 학생 참여율 50% 미만, 기관장 및 고위직(보직 교원 등)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 미실시 등

※ 본 연간계획서는 여성가족부의 『2025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에 근거하여,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인 우리 대학의 실적 점검 평가 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